

[인권경영 정책]

금호미쓰이화학은 “존중”이라는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존중의 자세를 지향하며, 기본적 인권과 인간 존엄에 대한 존중을 실천하고 추구한다. 금호미쓰이화학은 회사의 모든 사업장과 구성원에게 본 인권 경영 정책(이하 ‘정책’)을 적용하고 잠재적인 인권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운영체계 확립과 인권 경영 실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금호미쓰이화학은 UN인권위원회의 ‘UN 기업과 인권에 대한 지침(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s)’, ‘UN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국제 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기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UN글로벌컴팩트(UN Global Compact) 10대 원칙’과 국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본 정책은 위의 지침 및 규범을 비롯해 UN글로벌컴팩트의 ‘기업과 인권 실사 지침서’, 그리고 책임있는 비즈니스 연합(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RBA)의 ‘Global Code of Conduct’ 등을 기반으로 수립하였고, 금호미쓰이화학의 모든 구성원이 지켜 나가는 인권 경영의 기본 원칙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일 2024년 6월 30일

인권경영규정

1) 목적

본 규정은 금호미쓰이화학의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임직원을 포함하여 공급망, 고객, 지역사회의 구성원 등 금호미쓰이화학이 사업 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모든 이해관계자에 적용한다.

3) 인권경영 일반원칙

인권 존중

금호미쓰이화학은 모든 구성원 및 회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이를 침해하고 학대하는 어떠한 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이를 위해, 구성원에 대한 성적 차별이나 학대, 또는 성희롱, 정신적·육체적 강압, 폭언 등의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강압 행위,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일절 금지하며, 매년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구성원의 인권 의식 향상에 힘쓴다.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Diversity, Equity & Inclusion) 존중 및 차별금지

금호미쓰이화학은 성별, 국적, 민족, 인종, 지역, 학력, 임신 및 출산, 나이, 장애, 종교, 성 정체성, 정치 성향 등을 이유로, 채용, 임금 및 보상, 승진, 복리후생, 교육 등에 있어 일체의 차별을 금지한다. 금호미쓰이화학은 회사의 인재상에 부합하고 충분한 능력과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고 구성원의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아동 노동 금지

금호미쓰이화학은 모든 형태의 아동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에 따라, 만 15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고용하지 않으며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 및 지역의 법규에서 아동 및 청소년 노동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정의하는 경우 이 기준을 준수한다. 금호미쓰이화학은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야간/초과 근무를 포함한 안전보건상 위험하고 유해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강제 노동 금지

금호미쓰이화학은 노예제도, 인신매매, 채무 노동 등 정신적·육체적으로 구속하고 개인의 자유의사를 벗어난 노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금호미쓰이화학은 고용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개인의 신분증, 여권 및 노동 허가증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3) 인권경영 일반원칙

임금 및 보상

금호미쓰이화학은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 및 지역의 법규에서 정한 최저 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불가피하게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 동일 법규에 따라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한다. 동일한 수준의 가치 노동을 수행하는 임직원에게 대해 성별, 고용형태, 장애 등에 대한 차별 없이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개인의 성과와 역량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공정하게 보상한다. 모든 구성원의 임금은 사업장이 있는 각 국가 및 지역의 법규에서 정한 생활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정한다.

근로 시간

금호미쓰이화학은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 및 지역의 법규에서 규정하는 최대 근로시간 기준과 휴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이를 초과하여 근무할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금호미쓰이화학은 타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성희롱·성폭력, 강압적 행위, 수치심 유발, 폭언 등을 포함한 일체의 괴롭힘 행위를 금지한다. 특히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모든 형태의 괴롭힘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대해 고충처리 채널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제보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호미쓰이화학 제보 운영 방침'에 따른다.

결사의 자유

금호미쓰이화학은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 및 지역의 법규에 따라 보장된 결사 및 단체교섭 권리를 존중하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의 결성, 가입, 활동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처우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금호미쓰이화학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지 않고 회사와 근로자 대표간의 합의를 통한 결과에 대해 성실히 이행한다. 또한, 사업장 별 정기 및 수시 노사협의회 운영을 통해 원활한 노사간 소통 체계를 확립한다.

3) 인권경영 원칙

안전보건

금호미쓰이화학은 안전보건경영 정책을 이행하고, 임직원에게 안전한 근로 환경 제공을 위해 설비, 장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 유지보수한다. 또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구 제공 및 안전 교육 등의 사전 조치는 물론, 업무 상 질병 및 사고에 대한 조사, 재발 방지 대책 등의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환경권보장

금호미쓰이화학은 지구의 자연과 환경적 가치를 보존하고 인류와 환경이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해 환경경영정책을 수립하고, 사업활동으로 인한 리스크에 대한 완화예방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공급망

금호미쓰이화학은 공급망에서 인권 존중을 실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호미쓰이화학은 공급망에서 발생 가능한, 아동노동, 강제노동, 차별, 분쟁광물 및 책임광물 구매 등의 인권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식별한다. 공급망에서 인권 리스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책을 수립 및 이행한다. 금호미쓰이화학은 공급망과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수시로 실시하고, 인권 리스크 현황 및 개선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공급망 전반에서의 인권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고객

금호미쓰이화학은 경영활동에서 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충분히 고려하여 고객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금호미쓰이화학은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반영한 처리 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급하며, 기존 정해진 목적과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정보의 당사자로부터 동의를 받는다. 금호미쓰이화학은 고객의 정보 보호를 위해 관련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 유출의 방지를 위해 보안 관리 강화를 실시한다.

지역 사회

금호미쓰이화학은 사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인권 이슈 및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예방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구성원이 당면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4) 인권경영체계

인권경영정책

금호미쓰이화학은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인권경영정책을 마련하고, 임직원은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인권경영계획 수립

금호미쓰이화학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는 인권경영의 목표와 기본방향, 인권경영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인권실태조사 와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 및 점검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인권경영제도와 절차

금호미쓰이화학은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인권경영주관부서, 인권경영위원회, 인권실천 및 점검의무, 인권영향평가, 인권침해 구제제도 등과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한다.

인권교육

금호미쓰이화학은 모든 임직원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인권경영주관부서는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5) 인권영향평가

금호미쓰이화학은 인권실천, 점검의무의 일환으로 필요에 따라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인권경영주관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독립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인권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결과를 심의하고 채택한다.

6) 인권침해구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금호미쓰이화학 사이버 제보실 웹사이트 및 담당부서에 내부 신고 절차를 통하여 제보가 가능하며, 당사의 제보자 보호원칙에 따라 신고 및 제보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익명으로 보호한다. 인권 침해 제보 유형은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차별 행위, 강제노동, 아동노동, 직장 내 괴롭힘 등 구성원과 사업 관계자 가운데 발생하는 모든 인권 침해의 경우이며, 제보 시 관련 규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모든 인권 침해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온라인 사이버 제보실 : <https://justice.kkpcgroup.com/app/ethicsReportInfo>

제정일 2023년 6월 30일

1차 개정일 2024년 6월 30일